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

제정 2011. 9.29. 규칙 제571호
전부개정 2012. 3.12. 규칙 제593호
개정 2013.12.31. 규칙 제640호
개정 2015. 4. 2. 규칙 제66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에 의거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매년 2월 말일 현재 파견 및 휴직중인 자를 포함하여 본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총장 및 조교는 제외한다.

제3조(평가주기)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제4조(평가대상기간) 평가 대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평가주체) 평가는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구성된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6조(평가일정 및 절차) ① 평가대상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별지 1호 서식의 평가신청서에 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고, 총장은 매년 4월 중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매년 5월 초까지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대상자 각 개인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③ 총장은 매년 5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여 6월 보수지급일부터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제7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교육활동영역, 연구활동영역, 봉사활동영역의

세 영역과 특별가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8조(평가영역별 배점) 평가영역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영역 : 40
2. 연구활동영역 : 50 + α
3. 봉사활동영역 : 10
4. 특별가점 : + α

제9조(평가영역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영역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제10조(평가단위) 평가단위는 이론분야 정년보장 교원, 이론분야 비정년보장 교원, 전문실기분야 교원으로 구분한다.

제11조(평가등급 및 배정인원) ① 평가등급은 평가단위별로 업적평가 점수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며, 총장은 전문실기분야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업적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S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각 등급별 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S등급 : 15%
2. A등급 : 35%
3. B등급 : 45%
4. C등급 : 5%

제12조(성과연봉 재원 배분) 평가단위별 성과연봉 재원 배분은 당해연도 성과연봉 기준액에 평가단위별 소속 교원 수 만큼 곱한 금액을 배분한다.

제13조(등급별 인원결정방법) ① 소수점 이하의 등급별 인원 배정 방법은 정수의 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높은 순서로 배정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상위등급의 인원수로 배정하되, 평가단위별로 C등급을 최소한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평가대상인원별 등급인원 조건표는 [별표 6]과 같다.

제14조(성과연봉 지급액) ① 성과등급별 성과연봉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S등급 : 기준액의 1.5배
2. A등급 : 기준액의 1.2배
3. B등급 : 기준액의 0.85배 이하
4. C등급 : 0 (없음)

② 성과연봉 지급액 결정은 성과연봉기준액에 업적평가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결정하되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지급한다.

③ 총장은 S등급을 받은 교원 중 본 대학교를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의 3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S등급 인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지급방법)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연봉을 책정한 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총장의 연보수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성과연봉의 일부를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당해 연도 총장의 연보수액(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제16조(성과연봉 지급 제외) 실제로 근무한 기간(연구년제 교수, 파견, 휴직, 직위해제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년제교수,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 파견에 해당되어 당해연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음연도 연봉의 정기조정 시 전년도 정책조정액(성과연봉의 차년도 일부 가산액)의 1인당 평균액을 지급한다.

제17조(총장임기 만료 시 평가방법) 총장이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

연봉은 다음 중 유리한 금액을 책정·지급하되, 총장 재직기간 동안의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연봉 평가기준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신규임용 교원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금액
2.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에 수령하던 기본연봉에 총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정책조정액(공무원 처우개선분 및 총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성과연봉 중 기본연봉에 누적되지 않은 일부 가산액)을 합한 금액

제18조(신임교원 평가방법) 신임교원의 경우 최초 업적평가지 기존교원과 분리하여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부터는 평가단위내 재직교원과 같이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단, 2학기에 신규임용된 교원의 경우도 1학기에 신규임용된 교원과 업적평가를 함께 실시한다.

제19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는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다만, 업적평가 일정 미준수, 업적 등록 누락, 본인 과실 등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비밀유지) ① 연봉조정내역 통보시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②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평가에 참여한 모든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항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활용의 범위) ① 평가결과의 활용범위는 성과급 지급, 승진임용, 재임용, 재계약임용, 정년보장, 우수교원의 선정·포상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전문실기교원 성과급 지급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3.12.31>

② 평가자료를 제1항의 범위외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제22조(활용방법) ①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재임용 및 재계약임용 대상자는 최근 3년간의 업적 평균평점(해외연수, 휴직 등 업적평가실적이 없는 기간은 제외)이 120점(연구전담교원은 1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문실기 교원은 [별표 2]의 연구활동 영역 평가점수가 20점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12.31>

② 우수교원의 선정·포상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직전학년도
의 개인별 업적 평점 백분율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3.12.31>

제2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593호, 2012. 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임용된 재직교원 중 2012년
12월 31일 현재 비정년 교원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며, 2011년도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은 신규 임용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제640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와 [별표 5]는 2015년도 평가(평가대
상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업적평
가 점수는 이규정에 따른 업적평가 점수로 본다.

부 칙(제666호, 2015.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개정 2013.12.31>

『성과급적 연봉제』를 위한
전임교원 업적평가 신청서
(20 . 3. 1. ~ 20 . 2. 28.)

성 명	한글 :	직 급	이론분야 정년보장 교원 이론분야 비정년보장 교원 전문실기분야 교원
	한문 :		
	영문 :	분 야	
소 속	()단과대학 학과		
본 임 용 일	. . .	현 직 급 임 용 일	. . .
전 공 분 야		세 부 전 공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업적목록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고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인 직위 직급 성 명 : (서명)

- 붙임 : 1. 업적평가목록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별표 1] <개정 2013.12.31>

교육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이론분야(정년) 교원, 이론분야(비정년) 교원, 전문실기분야 교원]

구분	평가항목	최고 배점	배점 기준
학생 지도	- 학생지도실적 ① 학부지도교수 ② 행사(동아리 포함)지도 ③ 봉사활동 지도 ④ 교육실습 지도 ⑤ 학생상담 지도 ⑥ 졸업생 추수 지도 ⑦ 야외교육 지도(MT, 해양훈련 등)	10	평가항목 중 - 4종류이상의 활동에 참여 10점 - 3종류의 활동에 참여 8점 - 2종류의 활동에 참여 6점 - 1종류이하의 활동에 참여 4점
	※ 국가대표(후보선수) ☞ 전문실기분야 교원만 해당	10	국가대표 5점, 국가대표후보선수 3점, 국가대표 상비군 및 주니어 2점
	※ 학생중도탈락(퇴학·자퇴)		학생1인에 1점 감점
	석·박사 배출 실적	5	석사 2명이상 또는 박사 1명 배출 5점 석사 1명 배출 3점
소 계		25	
강 의	강의 시간수(학부+대학원+계절수업)	15	- 책임시수 강의 12점 - 책임시수 초과 강의 1시간당 1점가산 단, 3시간 초과강의까지 - 책임시수보다 부족시 1시간당 1점 감점
	강의계획서제출 (학부+대학원)	5	- 전 강좌의 강의계획서 제출 5점 - 최초 기한내 미제출 1교과목당 1점 감점 - 강의계획서 미제출 0점
	강의평가	15	· 평점 4.5점 이상: 15점 · 평점 4.0점 이상: 13점 · 평점 3.5점 이상: 11점 · 평점 3.0점 이상: 9점 · 평점 3.0점 미만: 7점
	영어강의	5	영어강의 5점
	휴강 및 보강 여부	5	- 휴강이 없거나 휴강후 보강실시 5점 - 결강시 시간당 -0.5점
	신교육 기법 개발 및 운용 ① 새교재 개발 ② 강의시 다양한 보조자료 이용 ③ 사이버강의 실시 ④ 교수 개인 홈페이지 관리	10	평가항목 중 - 2종류 이상 해당시 10점 - 1종류 해당시 5점
소 계		55	
합 계		80	

<세부 평가방법>

1. 교육활동영역 평가는 학생지도 및 강의 실적을 학기별로 평가하고, 1년간의 실적을 평균하여 해당점수를 산출하되,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교수 기간 중의 교육활동영역은 0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2] <개정 2015.4.2>

연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이론분야(정년) 교원, 이론분야(비정년) 교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논 문	국제전문학술지	100	
	국제학술지, 박사학위논문	60	
	기타외국학술지	40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6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50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30	
	교내 학술지	20	
	기타 국내학술지	20	
종합학술지에의 논평·서평	10		
저 서	국제전공학술저서	80	
	국내전공학술저서(대학교재 포함)	60	
	전공분야 번역서	40	
	편저	30	
	저서의 개정판	10	
	일반서적	10	
연구보고서	정부기관보고서	30	
	외부기관 및 사회단체보고서	18	
	기타보고서	12	
학술회의 활 동	국제전문학술회의 논문발표	30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15	
	국내전문학술회의 논문발표	10	
	국내학술회의 논문발표	8	
	국제전문학술회의·국제학술회의 좌장 및 토론자	5	
	국내전문학술회의·국내학술회의 좌장 및 토론자	2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국가포상(훈·포장)	50	
	국제학술·체육단체 수상	10	
	국내 학회 및 학술단체·중앙 체육단체 수상	5	
	국제특허	50	
	국내특허	30	
	실용신안특허	20	
	국제심판자격증 취득(당해년도)	10	
교 외 연구비	3,000만원 이상	40	
	2,000만원-3,000만원 미만	35	
	1,500만원-2,000만원 미만	30	
	1,000만원-1,500만원 미만	25	
	500만원-1000만원 미만	20	
	500만원 미만	15	
공 연	【별표 2-1】 추가	해당 배점	
전공실기	【별표 2-2】 추가	해당 배점	
산학협력	【별표 2-3】 추가	해당 배점	

<세부 평가방법>

1. 이론분야 교원의 연구활동영역 평가는 연구업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하되,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
2. 논문이나 저서의 공동집필의 경우 각각 해당 항목별 배점에서 2인 70%, 3인 50%, 4인 30%, 5인 이상 10인까지 20%, 11인 이상 20인까지 10%를 인정하며 공동연구의 책임자 및 교신저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3.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교수 기간 동안의 연구활동영역 실적은 상기 '세부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전문실기분야 교원도 연구활동영역 실적을 평가하며 연구활동영역 실적평가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교외연구비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상기의 표와 같다. 단, 전문실기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평가 점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각 제출물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논문

- 1) 논문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분야별로 전문학술지를 등급별로 나누어 선정하고 선정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상이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회의 주제로 발표하였을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3) 국내학술지에 게재되어 평가를 받은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번역 게재된 경우 그 시점에서 등급차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인정한다.
- 4)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의 등급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국제전문학술지는 SCI 및 SCIE(Science Citation Index or Extended),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된 국제적학술지를 말한다.
 - 나) 국제학술지는 SCOPUS에 등재된 국제적학술지를 말한다.
 - 다) 기타 외국학술지는 가) 및 나)호에 속하지 않으나, 정기 발행 되는 국외의 학술지를 말한다.
 - 라) 국내전문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후보)된 학술지를 말한다. 박사학위논문은 내용의 일부를 공인 학술지 등에 게재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마) 기타 국내학술지는 국내 전문학술지 기준에는 못 미치나 전국규모의 학술 단체에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전문학술지 또는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논문집을 말한다.
 - 바) 종합학술지에의 논평·서평은 일반출판사나 기타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전문분야의 종합 학술지에의 논평·서평을 말한다.

나. 저서

- 1) 국제전공학술저서는 국외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자비출판 제외)를 말한다. 국내 출판저서가 우수성이 인정되어 외국출판사에서 출간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등급 차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인정한다.
- 2) 국내전공학술저서는 국내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와 대학에서의 강의를 위한 전공분야 대학교재(가상강의를 위한 대학교재 포함)를 말한다.
- 3) 전공분야 번역서는 전공 관련 학술서 또는 문예창작집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 4) 편저는 여러 사람의 논문 및 이론들을 모아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 5) 저서의 개정판은 이미 출판된 저서의 내용을 모아 삼분의 일 이상 개정하여 출간한 사실이 인정된 서적을 말한다.
- 6) 일반서적은 국제전공학술저서, 국내전공학술저서, 전공분야 대학교재, 편저이외의 저서를 말한다. 다만, 이미 업적으로 평가받은 논문 등의 모음집 형태의 저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연구보고서

- 1) 연구보고서는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아니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 2) 정부기관보고서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전공 관련 보고서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정부부처 등의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단, 공인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보고서는 제외하고,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논문으로 발행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3) 외부기관 및 사회단체보고서는 연구관련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요청에 의한 전공 관련 보고서와 학술단체, 기업체 등의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 4) 기타 보고서는 국내외 활동 중 특별한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인정된 보고서를 말한다.

라. 학술회의활동

- 1) 국제·국내 학술회의에서의 논문발표는 평가대상의 실적물이 초록집에 수록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좌장·토론자는 평가대상자의 역할이 프로그램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2) 학술회의활동의 평가항목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국제전문학술회의는 국제전문학술지[SCI(Science Citation Index),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된 국제적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
 - 나) 국제학술회의는 국내·외에서 최소 5개국 이상(한국 포함)이 참여하고 외국학자 10인 이상이 발표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
 - 다) 국내전문학술회의는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에 등재(후보)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
 - 라) 국내학술회의는 상기 다)의 국내전문학술회의 이외의 학술회의를 말한다.

마. 수상·특허 및 자격증

- 1) 국가포상 및 국제학술단체상은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로 인하여 국가 및 국제학술단체로부터 수여된 상을 말한다.
- 2) 국내·외 학회 및 학술단체상은 국내·외의 공인된 학회 및 학술단체로부터 학술업적을 인정받아 수여된 상을 말한다.
- 3) 특허 및 실용신안특허는 특허를 출원하여 국내·외에서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인증된 것을 말한다.
- 4) 국제심판증은 공인된 것으로 평가년도에 취득한 것을 말한다.

바. 교외연구비

- 1) 교외연구비는 정부기관 및 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당해년도에 연구교수 몫으로 학교에 입금된 연구비 총액을 말한다.
- 2)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산출 방법은 연구책임자는 총연구비 $\times [1 \div (n+1)] \times 2$, 공동연구자는 총연구비 $\times [1 \div (n+1)]$ 로 산출한다. (n은 총연구자 수)
- 3) 교외연구비에 대한 배점기준은 연구비수혜 계약기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다년간 연구과제인 경우 수혜연구비를 연도별로 분할하여 인정한다.

[별표 2-1]

연구활동영역 중 『공연』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공연 (교수)	국제 공연	국제공연(안무)	30점	- 5개국 이상이 참가한 국제무용 페스티벌의 안무	
		국제공연 (연출 및 출연)	○ 해외에서 개인공연 안무(60분)	15점	- 5개국 이상이 참가한 국제무용 페스티벌의 연출 및 출연
			○ 해외전문무용단 공연 안무(60분)	15점	
			○ 해외에서 무용단의 공연 연출 및 출연(60분)	10점	
	국내 공연	국내공연 (안무)	○ 대극장(400석이상)	20점	- 개인(무용단) 단독공연의 안무(60분)
			○ 소극장(400석미만)	15점	
		국내공연 (연출 및 출연)	○ 대극장(400석이상)	10점	- 개인(무용단) 단독공연의 연출 및 출연(60분)
			○ 소극장(400석미만)	5점	
	그룹 무용제 참가(안무)			10점	- 한국무용제전, 서울무용제, 대학무용제, 춤작가전 등등
	그룹무용제참가(연출, 출연)			5점	- 한국무용제전, 서울무용제, 대학무용제, 춤작가전 등등
입상 실적 (학생)	군면제 대회 1위 입상		20점	- 동아콩쿨, 신인콩쿨등 군면제혜택이 있는 콩쿨 1위 입상	
	국내대회 입상		10점	- 서울 한국무용협회및 사단법인체 이상의 공인된 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콩쿨의 1위 입상자	

주) ① 60분을 1회 공연기준으로 2명 이상이면 N분의 1로 나눈다.
 ② 국제 및 국내공연은 각각 연 1회 최고점만 인정한다.

[별표 2-2]

연구활동영역 중 『전공실기』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1위 (금메달)	2위 (은메달)	3위 (동메달)	
입상실적 시범공연	국제대회 입상 (3위 이내)	세계선수권대회	30	25	20	
		아시아경기대회	25	20	15	
		유니버시아드	20	15	10	
		아시아선수권대회	15	10	5	
		15개국 이상 출전한 국제대회	10	7	3	
	국내대회 입상		10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유관 단체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당해 연도 최고성적 1회만 적용
	해외시범 공연(연 1회 인정)		10			- 해외시범공연만 인정

주) ① 입상실적은 교수 1/n(단, 태권도학과의 경우 n=2명)로 한다.
 ② 국제 및 국내대회는 각각 연 1회 최고점만 인정한다.

[별표 3] <개정 2015.4.2>

전문실기분야 연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1위 (금메달)	2위 (은메달)	3위 (동메달)	국가대표 참가인원 (1인당/연 20점 까지만인정)				
국제대회	올림픽	200점	150점	100점	5점				
	세계선수권대회	140점	80점	60점	3점				
	아시아경기대회	90점	50점	30점	2점				
	유니버시아드대회	60점	40점	20점	2점				
	아시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주니어대회)	20점	15점	10점	1점				
	아시아청소년(주니어대회) 동아시아대회	15점	10점	5점	0.5점				
	대한체육회인정 국제대회 (협회에서 예산지원대회 포함)	15점	10점	5점	0.5점				
	한국신기록 이상	1종목에 5점 가산점 부여 (1년에 2회 이상은 불인정)							
국내대회	개인종목 대한체육회 인정 국내대회 중 선발전, 대학대회, 일반대회의 경기실적 중 4개 대회의 실적 (본인이 선택)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비고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0점	
		65 이상	59 ~64.9	53 ~58.9	47 ~52.9	44 ~46.9	41 ~43.9	40.9 이하	T점수
	한국신기록 이상	1종목에 5점 가산점 부여 (1년에 2회 이상은 불인정)							
	단체종목	등 급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실적 있음	실적 없음
	등급산출	3위 이내(1~2위:100%, 3위:50%인정) 입상 회수 / 대회수 × 100							

<세부 평가방법>

1. 전문실기분야 교원의 연구활동영역 평가는 경기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하되,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
2. 상기 1)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단, 하키는 월드컵대회 인정),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주니어대회), 아시아청소년(주니어대회), 동아시아대회]의 경기실적은 다음 대회 개최 전년도까지 해당점수를 매년 인정한다.
3. 국제대회에서 단체종목(하키, 핸드볼만 해당됨)이 2인 이상 참가하여 메달을 획득한 경우, 해당대회 배점을 참가인원 1명당 각10%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4. 종목별 국제대회(해당 협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참가한 국제대회로서 대한체육회가 인정한 대회)와 국내대회의 경기실적은 해당년도 실적으로만 인정한다.
5. 4개의 국내대회 경기 1위 실적을 T점수로 환산하여 7단계의 등급 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단, 수영종목의 수구는 개인종목과 동일하게 경기 1위 실적만 인정한다.

$$T점수 = [(비율점수 - 비율점수 전종목 평균) / 표준편차 × 10] + 50$$

$$* 비율점수 = (k1/n + k2/n + k3/n + k4/n) × 100$$

· k는 부에서 정한 4개 대회 1위 입상 수

(출전대회수가 4개에 미달일 경우도 4개 대회로 평균함)

· n은 해당 종목으로 입학하여 재학중인 전체 학생수(4.1일 기준)

6. 감독 또는 코치 등으로 파견되었을 경우, 파견 기간 동안의 연구활동실적은 상기 ‘세부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한다.
7. 점수산정 방법 : 평가점수 × 교수가중치 × 조교가중치 × 학생 가중치

* 가중치

교수		조교		학생	
교수 수	가중치	조교 수	가중치	학생 수	가중치
		0	105%	20명 이하	102%
1명	105%	1명	100%	30명 이하	101%
2명	100%	2명	99%	40명 이하	100%
3명 이상	95%	3명 이상	98%	50명 이하	99%
				51명 이상	98%

※ 학생 수, 교수 수, 조교 수는 4.1.기준

[별표 4] <개정 2013.12.31>

봉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이론분야(정년) 교원, 이론분야(비정년) 교원, 전문실기분야 교원]

구분	평가항목	건별 평점	배점기준
교 내	보직교원	5	- 책임시수 6시간 이하 5점 - 책임시수 8시간 이하 3점 - 기타보직 2점
	각종 위원회 위원	1	연간 2개 위원회 2점까지 인정
	동아리 지도교수	1	연간 2개 동아리 2점까지 인정
	교수연수	5	교수연수 참가 5점
	교내 교수법 연수	5	건별 2점, 최대 5점
	각종교내 행사 참여	1	교수회의, 입학식, 졸업식행사 참여 1회당 1점
	분야별 전담교수	2	전문실기지도 겸임교수 대학원 주임교수
	조조훈련 및 동하계 방학기간 중 강화훈련	5	30일 2.5점
	교내특강	1	연간2회 2점까지 인정
교 외	국가기관의 정책자문·심의위원	2	위원 및 임원으로 선임된 후 학교의 승인을 받아 평가기간 중 6개월 이상 재임한 것에 한하여 건당 해당평점을 부여한다.
	국제학술·체육단체 및 기구 임원	2	
	국내학술·체육단체 및 기구 임원	1	
	기업체·기타 저명한 사회 단체 자문위원 및 임원	0.5	연간 2건에 1점까지 인정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및 심사위원	0.5	연간 4건에 2점까지 인정
	학술강연	1	전공과 관련한 강연으로 연간 2회 2점까지 인정
	교외봉사활동 및 기타	1	사회복지단체 등 봉사활동
	주요국제대회 임원 및 심판	5	
	국제대회 임원 및 심판	3	연간 2회 6점까지 인정

<세부 평가방법>

1. 봉사활동영역 평가는 봉사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수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교수 기간 동안의 봉사활동실적을 평가한다.

[별표 5] <개정 2013.12.31>

특별가점 평가항목 및 배점

[이론분야(정년) 교원, 이론분야(비정년) 교원, 전문실기분야 교원]

평가항목	분야	최고배점	배점기준	배 점 방 법
학생취업실적	이론분야	없음	취업자수	1인당 10점
	전문실기 분야	100점	취업자율	$(\text{취업자수} \div \text{졸업자수}) \times 100$
강의수강인원	이론분야	20점	학기당 학부 총 수강인원	- 200명 이상 : 10점 - 180명 이상 ~ 200명 미만 : 8점 - 160명 이상 ~ 180명 미만 : 6점
초과강의시간	이론분야	20점	초과시수	책임시수 초과 시간당 4점

[별표 6] <개정 2013.12.31>

평가대상 인원별 등급인원 조건표

성과등급 평가대상인원		SS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	15%	35%	45%	5%	
1	비율				100%		100%
	인원				1		1
2	비율			50%	50%		100%
	인원			1	1		2
3	비율		33%	33%	33%		100%
	인원		1	1	1		3
4	비율		25%	25%	25%	25%	100%
	인원		1	1	1	1	4
5	비율		20%	20%	40%	20%	100%
	인원		1	1	2	1	5
6	비율		17%	33%	33%	17%	100%
	인원		1	2	2	1	6
7	비율		14%	29%	43%	14%	100%
	인원		1	2	3	1	7
8	비율		13%	38%	38%	13%	100%
	인원		1	3	3	1	8
9	비율		11%	33%	44%	11%	100%
	인원		1	3	4	1	9
10	비율		20%	30%	40%	10%	100%
	인원		2	3	4	1	10
11	비율		18%	27%	45%	9%	100%
	인원		2	3	5	1	11
12	비율		17%	33%	42%	8%	100%
	인원		2	4	5	1	12
13	비율		15%	31%	46%	8%	100%
	인원		2	4	6	1	13
14	비율		14%	36%	43%	7%	100%
	인원		2	5	6	1	14
15	비율		13%	33%	47%	7%	100%
	인원		2	5	7	1	15
16	비율		13%	38%	44%	6%	100%
	인원		2	6	7	1	16
17	비율		12%	35%	47%	6%	100%
	인원		2	6	8	1	17
18	비율		17%	33%	44%	6%	100%
	인원		3	6	8	1	18
19	비율		16%	37%	42%	5%	100%
	인원		3	7	8	1	19
20	비율		15%	35%	45%	5%	100%
	인원		3	7	9	1	20
21	비율		14%	33%	48%	5%	100%
	인원		3	7	10	1	21
22	비율		14%	36%	45%	5%	100%
	인원		3	8	10	1	22
23	비율		17%	35%	43%	4%	100%
	인원		4	8	10	1	23
24	비율		17%	33%	46%	4%	100%
	인원		4	8	11	1	24
25	비율		16%	36%	44%	4%	100%
	인원		4	9	11	1	25
26	비율		15%	35%	46%	4%	100%
	인원		4	9	12	1	26
27	비율		15%	37%	44%	4%	100%
	인원		4	10	12	1	27
28	비율		14%	36%	46%	4%	100%
	인원		4	10	13	1	28
29	비율		17%	34%	45%	3%	100%
	인원		5	10	13	1	29
30	비율		17%	37%	43%	3%	100%
	인원		5	11	13	1	30

성과등급 평가대상인원		SS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	15%	35%	45%	5%	
31	비율		16%	35%	45%	3%	100%
	인원		5	11	14	1	31
32	비율		16%	34%	44%	6%	100%
	인원		5	11	14	2	32
33	비율		15%	33%	45%	6%	100%
	인원		5	11	15	2	33
34	비율		15%	35%	44%	6%	100%
	인원		5	12	15	2	34
35	비율		14%	34%	46%	6%	100%
	인원		5	12	16	2	35
36	비율		14%	36%	44%	6%	100%
	인원		5	13	16	2	36
37	비율		14%	35%	46%	5%	100%
	인원		5	13	17	2	37
38	비율		16%	34%	45%	5%	100%
	인원		6	13	17	2	38
39	비율		15%	36%	44%	5%	100%
	인원		6	14	17	2	39
40	비율		15%	35%	45%	5%	100%
	인원		6	14	18	2	40
41	비율		15%	34%	46%	5%	100%
	인원		6	14	19	2	41
42	비율		14%	36%	45%	5%	100%
	인원		6	15	19	2	42
43	비율		16%	35%	44%	5%	100%
	인원		7	15	19	2	43
44	비율		16%	34%	45%	5%	100%
	인원		7	15	20	2	44
45	비율		16%	36%	44%	4%	100%
	인원		7	16	20	2	45
46	비율		15%	35%	46%	4%	100%
	인원		7	16	21	2	46
47	비율		15%	36%	45%	4%	100%
	인원		7	17	21	2	47
48	비율		15%	35%	46%	4%	100%
	인원		7	17	22	2	48
49	비율		14%	35%	45%	6%	100%
	인원		7	17	22	3	49
50	비율		16%	34%	44%	6%	100%
	인원		8	17	22	3	50
51	비율		16%	33%	45%	6%	100%
	인원		8	17	23	3	51
52	비율		15%	35%	44%	6%	100%
	인원		8	18	23	3	52
53	비율		15%	34%	45%	6%	100%
	인원		8	18	24	3	53
54	비율		15%	35%	44%	6%	100%
	인원		8	19	24	3	54
55	비율		15%	35%	45%	5%	100%
	인원		8	19	25	3	55
56	비율		14%	36%	45%	5%	100%
	인원		8	20	25	3	56
57	비율		14%	35%	46%	5%	100%
	인원		8	20	26	3	57
58	비율		16%	34%	45%	5%	100%
	인원		9	20	26	3	58
59	비율		15%	36%	44%	5%	100%
	인원		9	21	26	3	59
60	비율		15%	35%	45%	5%	100%
	인원		9	21	27	3	60